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5,000,000	16,950,000
일반회계	445,500,000	13,365,000
특별회계	119,500,000	3,585,000
공기업특별회계	25,000,000	75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00,000	42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000,000	330,000
기타특별회계	94,500,000	2,83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350,000	100,5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52,000	64,5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60,000	19,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150,000	64,500
주택사업특별회계	760,000	22,8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90,000	11,7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10,000	33,300
치수사업특별회계	2,583,000	77,49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410,000	132,300
대지보상특별회계	700,000	21,0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0	1,0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200,000	2,286,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19,61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